

# 제109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**일시·장소:** '24. 9. 23.(월) 12:55 ~ 13:30 / 인천해경서 연평파출소

※ 해양경찰위원 연평도 현장방문 관계로 **2원 화상회의로 진행**

## □ 참 석 자

○ 해양경찰위원회 : 길태기 위원장 등 <sup>박용철 위원 온라인 참석</sup> 해양경찰위원 6명

○ 해양경찰청 : 차장, 장비기술국장, 안전 소관 국·과장 등 8명

※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(별관 4층)에서 화상으로 접속

## 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2건 (수정의결 2)

### 【심의·의결 2건】

연번	형식	안 건 명	내 용	심의 결과	부서				
1	훈령	「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령 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양경찰청 <b>훈련협의회</b> 위원선정 대상을 특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을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0;"> <tr> <th>현 행</th> <th>개 정</th> </tr> <tr> <td>본청, 지방청 및 중특단의 현장 훈련과 관련된 각 부서의 공무원 中 지명</td> <td>본청 현장부서 훈련 관련부서 계장, 지방청 교육훈련계장, 중특단 교육훈련팀장</td> </tr> </table> </li> <li>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에 맞는 훈련집행을 위해 소속기관별 훈령 실무협의회 근거 마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주요내용) △ 매년 1회 이상 개최 △ 기획운영과장(위원장), 함정장, 파출소장, 훈련관련 계장으로 위원 구성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수정사항</b> '현장부서' 정의에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'중특단' 및 '해양특수구조대'를 다른 부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명시</p>	현 행	개 정	본청, 지방청 및 중특단의 현장 훈련과 관련된 각 부서의 공무원 中 지명	본청 현장부서 훈련 관련부서 계장, 지방청 교육훈련계장, 중특단 교육훈련팀장	수정의결	교육 훈련
현 행	개 정								
본청, 지방청 및 중특단의 현장 훈련과 관련된 각 부서의 공무원 中 지명	본청 현장부서 훈련 관련부서 계장, 지방청 교육훈련계장, 중특단 교육훈련팀장								
2	훈령	「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개정에 따른 기존 「범죄신고자 보상에 관한 규칙」 훈령 폐지로 원활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독립적 규정 마련      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0;"> <tr> <th>기 존</th> <th>변 경</th> </tr> <tr> <td>범죄신고자 보상에 관한 규칙 (폐지) &lt;범죄 및 오염신고&gt;</td> <td>(수사)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*에 관한 규정 제정(9월 시행) (방재)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(제정 진행)</td> </tr> </table> </li> <li>※ (주요내용) △ 포상금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△ 포상금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△ 지급제한 및 환수 △ 기록관리 등</li> </ul> <p><b>수정사항</b> 규칙 내 적절한 용어 사용을 위해 정의 중 '해양오염 신고'와 '해양오염 행위' 내용을 병합하여 재정의</p>	기 존	변 경	범죄신고자 보상에 관한 규칙 (폐지) <범죄 및 오염신고>	(수사)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*에 관한 규정 제정(9월 시행) (방재)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(제정 진행)	수정의결	기동 방제
기 존	변 경								
범죄신고자 보상에 관한 규칙 (폐지) <범죄 및 오염신고>	(수사)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*에 관한 규정 제정(9월 시행) (방재)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(제정 진행)								

## 【보고 1건】

연번	안 건 명	부서
1	(보고) 해양경찰청 2025년 예산안 보고	기획재정

## 첨부1

## 수정의결 사항

### □ 「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」 일부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<p>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현장부서"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, <u>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</u>, 해상교통관제센터, 항공단 및 항공대, 특공대, 함정, 파출소 및 출장소, 해양경찰구조대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현장부서"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, <u>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</u>, 해상교통관제센터, 항공단 및 항공대, 특공대, 함정, 파출소 및 출장소, 해양경찰구조대, <u>그리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를 말한다.</u></p>
<p><b>수정사유</b> 현장부서를 정의하면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장부서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, 열거된 부서 중 '<u>중앙해양특수구조단</u>'은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소속기관의 다른 부서와 병렬적으로 열거되는 것은 부적절하여 <u>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중특단 소속 해양특수구조대는 별도로 분리하여 명시하도록 수정</u></p>	

### □ 「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<p>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해양오염 행위"란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 "해양오염 신고"란 해양오염 또는 해양오염 행위를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<u>이 규칙에서 "해양오염 신고"란 해양오염 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1. ~ 2. &lt;삭 제&gt;</p>
<p><b>수정사유</b> 용어 정의 중 '<u>해양오염 행위</u>'는 규칙 내에서 '해양오염 신고' 정의 규정에서만 사용하고 <u>별도의 용어 정의가 불필요함</u>. 따라서 <u>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병합하여 '해양오염 신고' 용어를 정의하도록 수정</u></p>	

**□ 해양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보고**

○ 5001함은 2028년 이후로 대체 건조 계획이 있는 것인지?

- 안전도 평가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 안전 상 크게 결함이 없다면 5001함보다 먼저 건조된 함정들이 있어 내구연한 초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.

○ 일본은 최신 함정이 독도 인근을 순시하는 등 이는 일종의 심리전으로도 볼 수 있는데, 독도라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도 대체 건조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은지?

- 우선순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음.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재보고 드리겠음.

○ 노후 함정의 대체건조는 함정 직원들의 안전이나 임무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림.

**□ 「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**

○ 일반 국민에 입장에서 신고포상금 산정 기준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워 보임. 국민들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음.